

# 일본 자판기 자주 가이드 라인

일본을 자판기 산업 선진국이라 하는 데는 그저 우리나라 8배에 달한다는 산업외형만에 있지 않다. 이 보다 더 중시해야 할 부분은 자판기 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산업계 자율적인 대책강구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자판기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실생활과 소비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계가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현재의 일본 자판기 산업이 있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여실히 엿볼 수 있는 게 「자판기 자주 가이드 라인」이다.

이 제도는 청량음료자판기 운영에 있어 「안전」이나 「안심」을 위한 대책이나, 자판기 소비 에너지의 절감, 사용 후의 적정 폐기, 사용이 끝난 용기의 산란 방지 등 자판기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자주 가이드 라인의 필요성 단지 이웃나라 일본에만 해당이 될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로 자판기 산업이 성숙 기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산업의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해 왔지만 앞으로 자판기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는 분명한 성장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 보다 멀리 보는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자판기 자주 가이드 라인」을 잘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현재 일본에서 적극 시행 중인 「자판기 자주 가이드 라인」의 전문을 게재했다



## 1. 「자판기 자주 가이드 라인」제정의 배경과 목적

청량음료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는 언제 어디에서라도 소비자에게 친밀한 음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로서 폭넓게 사회에 보급되어 있다.

한편 자판기를 둘러싸는 「안전」이나 「안심」을 위한 대책이나 자판기 소비 에너지의 절감, 사용 후의 적정 폐기, 사용이 끝난 용기의 산란 방지 등 자판기와 사회 및 환경과의 관계에는 종래 이상으로 꼼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판기의 판매 관리자 및 제공자는 그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전을 다하는 것은 물론 판매·관리에 임해, 법령·조례를 준수하는 것 외에 스스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해 그 주지 철저와 실천을 도모해 사회

요청이나  
환경에 적  
절히 대응  
한 서비스  
의 충실을  
기할 필요  
가 있다.



## 2. 정의

### 1) 자판기 판매 관리자란

관리하는 자판기의 소유권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자판기에 의해 청량음료를 스스로의 책임에 의해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자판기 제공자란 그 소유(리스에 의한 점유) 관리를

포함한다.) 하는 자판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판기 판매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대상 자판기

대상이 되는 자판기는 기능, 형식에 관계없이 청량음료를 판매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판기로 한다.

### 4. 자판기 판매 관리자 및 자판기 제공자가 자판기에 의한 청량음료 판매를 실시하는지에 해당되어 준수해야 할 기준

#### 1) 자판기 판매 관리자 및 자판기 제공자가 제공 또는 사용해야 할 자판기의 사양과 설치 방법에 대해

- ① 신규 자판기를 구입할 때는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이하 「에너지 절약법」)에 따라 에너지 소비 효율이 좋은 자판기의 선택에 노력한다.
- ② 자판기의 디자인 · 사양에 관여할 때는 에너지 소비 효율에의 유의에 노력한다.
- ③ 신설 자판기는 일본자동판매기공업회가 작성한 「자판기 견뢰화 기준」을 존중해, 로케이션에 맞는 방법 대책을 강구한 자판기로 한다. 또 기설 자판기에 대해서도 로케이션에 대응한 방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④ 디자인, 외관색에 대해서는 설치 장소에의 경관 배려에 노력한다.
- ⑤ 설치에 있어서는 일본자동판매기공업회 작성의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매뉴얼」을 준수해 전도 방지 등의 안전 확보를 십이분 실시한다.

#### 2) 사용이 끝난 용기 회수 박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 ① 자판기 판매 관리자는 사용이 끝난 용기 회수 박스(이하 「회수 박스」)를 원칙으로서 자판기 1대에 1개의 비율로 자판기 모서리 및 그 주변에 설

치한다. 다만 자판기가 병행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 주변의 상황을 감안해 설치 로케이션에 1개 이상의 적절한 개수를 설치한다. 이 경우 사용이 끝난 용기 회수와 처리 책임이 명확한 것을 전제로 한다.

#### ② 회수 박스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소재는 원칙으로서 플라스틱제 또는 금속제로 한다.
- (2) 회수 빙도와 회수량을 고려, 회수 박스로부터 빙 깡통 등의 사용이 끝난 용기가 훌러넘치거나 주위에 산란하지 않게, 충분한 수용 용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 (3) 사용이 끝난 용기 투입구는 종이 등의 일반 쓰레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형상을 가지는지, 그것을 위한 장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로케이션에 따라서는 투입구에 뚜껑을 붙이는 등 사용이 끝난 용기와 일반 쓰레기의 혼입 방지를 도모한다.
- (4) 사용이 끝난 용기 이외의 투입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뚜껑은 혹은 다는 등, 안이하게 열리지 않는 대책을 베푼 것으로 한다.
- (6) 외관색은 주변 환경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 ③ 자판기 판매 관리자는 회수 박스내의 사용이 끝난 용기를 적절히 처리한다.

#### 3) 자판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

##### ① 자판기 판매 관리자의 표시

- (1) 자판기 판매 관리자의 이름 · 주소 · 전화번호를 통일 스티커 또는 동등의 내용이 기록되었지만 첨부 등에 의해 반드시 명기하는 것.
- (2) 설치처의 관계 등으로 아무래도 자판기 판매 관리자명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는 자판기 판매 관리자 대신 해당 자판기에 의해 판매되는 제품의 판매자(경비 회사 등을 연락 창구로 하

고 있는 경우는 그 사람) 또는 자판기 제공자  
의 담당 부서명과 전화 번호 등을 명기한다.

- ② 사용이 끝난 용기의 산란 방지 계발의 표시  
전국청량음료공업회를 시작으로 하는 자판기 관련 단체 및(회사) 식품 용기 환경 미화 협회의 산란 방지 계발 포스터나 스티커 등은 적극적으로 붙인다.

- ③ 첨부에 대한 유의  
자판기의 이용자로부터 보이기 쉬운 장소에 붙여,  
그 표시가 이용자에게 충분히 인식 가능한 것.

#### 4) 자판기의 에너지 절약 · 사이클에 대해

- ① 에너지 절약법에 근거해 경제 산업 대신이 정하는 「자동판매기 성능 향상에 관한 제조 사업자의 판단 기준 등」을 존중한다.  
② 자판기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환경에 배려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용에 의해 에너지 소비의 절감에 노력한다.(대체 에너지의 이용이 가능한 자판기의 도입에도 노력한다.)  
③ 환경에 배려해 리사이클하기 쉬운 자판기의 채용에 노력한다.

#### 5) 폐기 처리하는 자판기의 취급

- ① 자판기 제공자(제공자와의 계약에 근거해 자판기 관리 판매자가 폐기해야 할 책무를 지게 되어 있을 때는, 그 사람)는 법령에 준거해 자판기의 폐기에 관해서 책임을 갖고 적정하게 처리한다.  
② 폐기 처리를 그 밖에 위탁하는 경우는 법령에 준거해 위탁계약을 체결해 적정하게 처리된 것을 마니페스트 전표에 의해 확인해야 한다.  
③ 자판기의 처리 방법은 전국청량음료 공업회, 일본자동판매협회, 일본자동판매기공업회, 일본자동판매기 보안정비협회 등 자판기 관련 4 단체가 작성한 「자판기 적정 폐기 메뉴얼」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프레온가스, 형광등, 전지는 사전 선별해 각각 적정하게 처리한다. 특히 프레온가스는 「특정 제품과 관련되는 프레온류의 회수 및 파괴 실시의 확보등에 관한 법률」에 준거해 적정하게 처리한다.  
⑤ 투기의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은 불법투기된 자판기에 대해서는 자판기 판매 표시 상품의 판매자가 (그 판매자가 복수의 경우는 전해당자가 협의한 후) 그 책임에 대해 회수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 6) 「안전」「안심」에의 배려

- ① 자판기 판매 관리자 및 제공자는 자판기의 설치, 관리, 폐기 및 자판기에 의한 상품 판매에 관해서 각종 메뉴얼을 정하는 등에 의해서 자판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제공에 노력한다.  
② 자판기 판매 관리자 및 제공자는, 자판기 범죄 박멸을 위해 방법 대책의 한층 더 강화와 함께 경찰과의 적극적 협력에 노력한다.

#### 7) 적용 기일

해세이 1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청량음료 관계자 준수기준

- 1) 자판기 판매 관리자 및 자판기 제공자가 제공 또는 사용해야 할 자판기의 사양과 설치 방법에 대해
- 2) 사용이 끝난 용기 회수 박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 3) 자판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
- 4) 자판기의 에너지 절약 · 사이클에 대해
- 5) 폐기 처리하는 자판기의 취급
- 6) 「안전」「안심」에의 배려